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본부에 신규 도입한 대용량포방사시스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소방장 1명, 소방교 2명)을 증원하고,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정책 및 채용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조정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소방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1명(5급 1명)의 직급을 2026년 9월 30일까지 상향 조정(4급 또는 5급)하고, 소방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용어를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용어와 일치하게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9. 3. ~ 9. 1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제4호 중 “소방교육훈련발전위원회”를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로 한다.

별표 3의2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소방정 2 다음에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의무사무관·소방정 또는 소방령 2”를 신설하고, “과학기술서기관·의무사무관·소방정 또는 소방령 1”를 삭제,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의무사무관·간호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기록연구관·공업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소방령 “12”를 “11”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488”을 “491”로, 소방공무원 계 “388”을 “391”로, 소방장 “74”를 “75”로, 소방교 “97”을 “99”로 한다.

별표 5의2 중 총계 “488”을 “491”로, 소방공무원 계 “388”을 “391”로, 소방장 “74”를 “75”로, 소방교 “97”을 “99”로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2026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10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 하는 정원은 별표 3의2의 정원 1명(5급 1명)으로 본다.

■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6]

소방청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12조 관련)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장비기술국	1명 (소방감 1명)	2026년 3월 31일까지
2. 119대응국 대응총괄과	6명 (소방준감 1명, 소방령 3명, 소방위 2명)	2026년 3월 31일까지
3. 화재예방국 위험물안전과	4명 (소방정 1명, 소방령 1명, 5급 1명, 소방위 1명)	2026년 3월 31일까지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획조정관) ① ~ ④ (생략)	제2조(기획조정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교육훈련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⑤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u>소방교육훈련발전위원회</u> 운영	4. <u>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u> -- --
5. ~ 14. (생략)	5. ~ 14. (현행과 같음)

신 · 구정원대비표

■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의2]

소방청 공무원 정원표(제9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u>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의무 사무관 · 소방정 또는 소방령</u>	<u><신 설></u>	<u>2</u>	+2
<u>과학기술서기관 · 의무사무관 · 소방정 또는 소방령</u>	<u>1</u>	<u><삭 제></u>	-1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의무 사무관 · 간호사무관 · 시설사무 관 · 방재안전사무관 · 전산사무 관 · 방송통신사무관 · 기록연구 관 · 공업연구관 · 시설연구관 또는 소방령	<u>12</u>	<u>11</u>	-1
· ·	· ·	· ·	

[별표 5]

중앙119구조본부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2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488</u>	• <u>491</u>	+3
소방공무원 계	<u>388</u>	<u>391</u>	+3
•	•	•	
•	•	•	
소방장	<u>74</u>	<u>75</u>	+1
소방교	<u>97</u>	<u>99</u>	+2
•	•	•	
•	•	•	

■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5의2]

중앙119구조본부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2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488</u>	• <u>491</u>	+3
소방공무원 계	<u>388</u>	<u>391</u>	+3
•	•	•	
•	•	•	
소방장	<u>74</u>	<u>75</u>	+1
소방교	<u>97</u>	<u>99</u>	+2
•	•	•	
•	•	•	